

행정기획위원회  
소 관

서울특별시 성북구  
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

성 북 구  
(기획예산과)

#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41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1. 11.

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학술연구용역의 관리체계를 정비하고, 연구결과 공개 확대 등을 통하여 연구용역의 공정성·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연구결과의 공개 근거 완비 및 적극적인 연구결과 공개(안 제13조)
  - 용역 결과의 '지체없는' 공개 및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원문은 부분공개
  -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일 경우에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 적시
- 나.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제재방안 마련 신설(안 제14조제3항, 제4항)
  - 용역 결과를 평가시, 행정안전부 정책관리시스템 등 복수의 검사 수단을 통하여 유사성 검사를 수행하도록 의무화
  - 유사성 검증 결과 연구부정이 있는 경우 향후 연구자 선정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유사성 검증결과를 사후조치와 연계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54조

**제54조 (정책연구의 공개)**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 [개정 2014.2.18]

1.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
2.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
3.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
4.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 [신설 2014.2.18, 2017.10.17]

③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[신설 2014.2.18]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협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

- 예고기간 : 2021. 9. 30. ~ 2021. 10. 20. (20일간)
- 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2) 신·구 조문대비표 : 별첨

3) 인권/부패/성별/아동 영향평가 결과

- 인권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-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동의
-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없음
- 아동영향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##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대하여 적용하되”를 “적용하되”로,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한다.

제5조제1호 중 “기”를 “기존”으로 한다.

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과반수 이상이”를 “과반수가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기획경제국장”을 “기획재정국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“남은기간”을 “남은 기간”으로 한다.

제8조제7항 단서 중 “경우에는”을 “때는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자체심사결과”를 “자체심사 결과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하나에 해당하는”을 “하나에 해당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자문,연구”를 “자문, 연구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때에”를 “때”로 한다.

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 본문 중 “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53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”을 “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5

3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(이하 “정책연구관리시스템”이라 한다)”으로, “통해”를 “통해 지체없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용역결과가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. 또한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.

제14조제1항 단서 중 “경우에는”을 “때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를 평가할 때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복수의 검사수단을 통하여 유사성 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.

④ 용역결과 평가과정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구 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용역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게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알리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.

⑥ 구청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인정된 용역의 수행자에게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는 위촉하되,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.

1. 기획경제국장 및 용역수행 관련 소관 국장·보건소장

2.·3. (생략)

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위원회 운영) ① ~ ⑥ (생략)

⑦ 간사는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고 별도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 다만, 서면심의·의결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

제9조(안건제출) ① (생략)

② 제1항의 심의할 안건에는 사업명, 사업목적, 사업의 필요성, 사업내용, 용역방법, 용역기간, 용역비용, 계약방식과 그 이유, 자체심사결과, 그 밖에 해당 안

-----  
----- 과반수가 -----  
-----.

1. 기획재정국장 -----  
-----

2.·3.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  
-----  
-----.  
----- 남은 기간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8조(위원회 운영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
⑦ -----  
-----  
-----.  
----- 때는 -----  
-----.

제9조(안건제출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자체심사 결과-----

건의 심의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제10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

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
1. 심의대상 용역과 관련하여 자문,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

2. 3. (생략)

② (생략)

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13조(용역결과의 공개) 과제담당

당관은 용역결과를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53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내용이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

-----  
-----.

제10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

① -----  
--- 하나에 해당하는 -----  
-----  
-----.

1. -----  
자문, 연구 -----  
-----

2. 3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때 -----  
-----.

제13조(용역결과의 공개) ① -----

-----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 제53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 (이하 “정책연구관리시스템”이라 한다)----- 통해 지체없이 ----- . <단서 삭제>



<신 설>

를 판정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용역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게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알리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.

<신 설>

⑥ 구청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인정된 용역의 수행자에게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다.